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노력 의무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99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1. 7.

(3) 회 부 일 : 2025. 11.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가 없음.

그런데 현재 대상시설 내에는 비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만이 주로 설치되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 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편의를 증진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지원) ①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장애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활동을 위하여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그네 등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에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 놀이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에 따른 대상시설¹⁾은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임.

- 특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종교시설, 학교,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체육관, 관광휴게시설 등이 포함됨(참고자료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개정안은 이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기존 대상시설 중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설비 이용 편의와 정보 접근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

1)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음을 고려하면, 동 법에 편의시설이 아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²⁾

- 참고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장애인등의 이용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089호)가 계류 중이며,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참고자료 2: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2) 「**장애인등편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아동의 놀이기구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은 「장애인등편의법」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동 법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및 제4조(접근권)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경사로,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를 살펴보면, 장애인등이 공원, 건축물 등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놀이기구’는 놀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편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3) 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6) 대피소
- (7) 공중화장실
- (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9) 지역아동센터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안마시술소
- (5)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6)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독서실, 기원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 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기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비고: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가목(1)·(2)·(3) 및 같은 호 나목(1)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제2호가목(4)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제2호가목(8)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참고자료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1. “어린이놀이 구”란 어린이 가 놀이를 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 조된 그네, 미 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 전놀이기구 등 으로서 「어린 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 조제9호에 따 른 안전인증대 상 어린이제품 을 말한다.	1. ----- -----어린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를 포함 한다. 이하 같 다)----- ----- ----- ----- ----- ----- -----.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략)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신설>	②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 어린이가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어린	②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	②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모 든 어린이가 어 린이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이라 한다)을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른 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 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 11 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자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1 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도 적합하도록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제 11 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 제11조제1항----- ----- ----- ----- ----- ----- ----- ----- ----- ----- -----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 제11조제1항----- ----- ----- ----- ----- ----- ----- ----- ----- -----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생략)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현행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 놀이 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 놀이 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6조의2(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지원) (생략) <u><신 설></u>		과 같음) ② ----- ----- ----- ----- 제11조제1항-----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모든 어린이의 편리한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	--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조례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지원</u> <u>할 수 있다.</u>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